

보장명 및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원)	납입보험기간
<b>1 자동차사고별급금Ⅱ(스쿨존사고 3천만원 한도)(운전자)</b>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별급형을 받은 경우 별급상당액(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3천만원	1,676	20년/20년
<b>2 자동차사고 별급(대물)(운전자)</b>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급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백만원	304	20년/20년
<b>3 교통사고처리보장Ⅶ(중상해보장확대)(운전자)</b>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매 사고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2.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하며, 다수 피해자 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음,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 1억원한도 / 175일이상 진단시 : 1억5천만원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4.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 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 에 한함)(피해자1인당 7천만원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 (단,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2억원	11,659	20년/20년
<b>4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운전자)</b>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 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을 기준으로 함): 부상등급 1~7급은 5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8~11급은 1천만원 한도, 부상등급 12~14급은 5백만원한도로 함.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지급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5천만원	4,202	20년/20년
<b>5 운전면허취소보장Ⅱ(영업용운전자)</b>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시	1천만원	800	20년/20년
<b>6 운전면허정지보장(영업용운전자)</b>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 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1일당, 1사고당 60일 한도)	5만원	270	20년/20년
<b>7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비용</b>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2천만원	14	20년/20년
<b>8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애(운전자)</b>	1천만원	160	20년/20년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장애분류표(약관참 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애시 (최초1회에 한함)			
<b>9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기본계약)</b>	1백만원	440	20년/20년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 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b>10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b>	3백만원	1,065	20년/20년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1000만원, 상해등급 2급 : 500만원, 상해등급 3급 : 300만원)			
<b>11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b>	3백만원	2,601	20년/20년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300만원, 5급 : 150만원, 6급 : 80만원, 7급 : 40만원, 8~11급 : 20 만원, 12~14급 : 10만원)			
<b>12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차대차사고)(운전자)</b>	6백만원	1,080	20년/20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위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 상해등급 2급 : 1000만원, 상해등급 3급 : 600만원)			
<b>13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차대차사고)(운전자)</b>	6백만원	3,738	20년/20년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 위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4~14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00만원 기준(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600만원, 5급 : 300만원, 6급 : 160만원, 7급 : 80만원, 8~11급 : 40 만원, 12~14급 : 20만원)			
<b>14 자동차사고치아보철보장</b>	30만원	210	20년/20년
교통사고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해(약관참조)를 입고 치아보철치료(크라운, 브 릿지, 완전 의치, 임플란트 등) 진단을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b>15 보복운전피해보장</b>	1백만원	13	20년/20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 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공소제기(약식 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함 ※ 하나의 「보복운전」이 아래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 전피해 보장보험금을 지급 ※ 보복운전의 정의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3.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4.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b>16 교통상해사망(운전자)</b>	5천만원	3,550	20년/20년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b>17 교통상해후유장애(3~100%)(운전자)</b>	5천만원	2,000	20년/20년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3~100%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약관참조)			
<b>18 상해수술비</b>	50만원	1,380	20년/20년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b>19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b>	5백만원	305	20년/20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 개흉, 개복 수술시 (최초1회에 한함)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			

<b>20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_1종</b>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1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0만원	200	20년/20년
<b>21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_2종</b>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2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15만원	147	20년/20년
<b>22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_3종</b>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3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30만원	57	20년/20년
<b>23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_4종</b>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4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만원	6	20년/20년
<b>24 상해1~5종수술비(매회지급)_5종</b>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Ⅱ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종 수술시 (수술1회당)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2백만원	4	20년/20년
<b>25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b>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상 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	20만원	722	20년/20년
<b>26 5대골절진단비</b>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머리의 으깬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 절/흉추의 다발골절, 요추/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로 진단확정시(매 사고시마다)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	50만원	285	20년/20년
<b>27 깁스치료비</b>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깁스치료시 (매사고시마다) ※ 단, 석고봉대 또는 섬유유리봉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 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 ※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비를 지급	20만원	164	20년/20년
<b>28 화상진단비</b>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약관참조)에 정한 화상에 해당되고 심 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된 경우 (매 사고시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 비를 지급합니다.	10만원	33	20년/20년
<b>29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b> 보험기간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같은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10만원	960	20년/20년
<b>30 가족화재별금</b>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별금형의 원인이 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별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별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 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별금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별금 : 1,500만원한도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별금 : 2,000만원한도 [ 피보험자의 범위]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 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2천만원	11	20년/20년
<b>31 (가족)과실치사상 별금비용</b>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사)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별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별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 사고마다 700만원(단, 과실치사일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별 금형에 해당하는 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별금액)	7백만원	4	20년/20년
	보장합계	38,060	